2019. 09 Vol.2

P&B Report

정무위원회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외 260건
교육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67건
국방위원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외 30건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6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3건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9건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75건
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6건

DR & AJU 입법전략센터
Government Relations Center

P&B Report

P&B Report는 대한민국 로펌 최초로 발간하는 **입법 정보 전문지**입니다.
의안 원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국회 회의록 등 국회 공식 자료만을 활용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입법 정보를 매월 제공합니다

SAMPLE

P&B Report 구성 소개

주요 구성

상정 법률안 목록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률안 목록을 소관 위원회별로 구분해 보여드립니다.

주요 법률안 소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상정된 법률안 중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엄선해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제안자: 법률안 제안 주체(국회의원의 경우 전체 명단과 소속 정당)을 소개합니다.
- 심사진행경과: 법률안 심사 전 과정을 접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5단계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자가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 주요발언: 국회의원, 전문위원, 정부관계자 및 기타참석자가 국회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공식 회의록에서 유의미한 발언을 발췌해 제공합니다.

법률안 비교·분석

주요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의 의원안이 다수 계류된 경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활용해 현행법과 의원안을 비교·분석하여 쟁점별로 타당성과 문제점을 소개합니다.

별첨

신규 상정 법률안 목록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 가운데 이달에 처음 상정된 법률안을 별도로 소개합니다.

국회 일정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의사일정을 위원회별, 날짜별로 구분해 소개합니다.

SAMPLE

Contents

I. 소위원회

08 **1. 상정 법률안 목록**

11 **2. 주요 법률안 소개**

정무위원회

11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13 2) 금융소비자 보호법안(최운열의원 대표발의)

15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17 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대표발의)

19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21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교육위원회

23 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4 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

25 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회

27 10-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대표발의)

28 10-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29 1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회

30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대표발의)

32 1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여성가족위원회

33 1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35 **3. 법률안 비교·분석**

35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37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II. 상임위원회

46 **1. 상정 법률안 목록**

50 **2. 주요 법률안 소개**

정무위원회

50 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대표발의)

51 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

53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대표발의)

54 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SAMPLE

55 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의원 대표발의)
56 5)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58 6-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9 6-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1 6-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대표발의)
62 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대표발의)
63 8)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대표발의)
64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회
65 1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회
67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회
69 1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의원 대표발의)
70 1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대표발의)
71 1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대표발의)
73 1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5 **3. 법률안 비교·분석**
75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77 2)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79 3)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83 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III. 국회본회의

86 **1. 통과 법률안 목록**

89 **2. 주요 법률안 소개**
89 1) 과학기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1 2)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대표발의)
93 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5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8 5)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100 6)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2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4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6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8 1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110 11)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114 별첨. 1. 8월 신규 상정 법률안 목록
117 2. 8월 국회 일정표
123 3. 용어해설

SAMPLE

SAMPLE

B&B Report

I. 소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3. 법률안 비교 · 분석

SAMPLE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정무위원회		1. 갈등관리기본법안
		2. 갈등기본법안
		3.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
		4.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5. 공공정책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0.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11.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
	○●	12.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	13. 금융소비자보호법안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32.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3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34. 월남전참전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3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교육위원회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7.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
		8. 교육시설기본법안
		9.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방과후 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5.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법률안
		1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3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32.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방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8.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9.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SAMPLE

정무위원회

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4128
제 안 자 새누리당 강석호·경대수·김성태·김승희·김종석·김학용·박성중·송석준·안상수·전희경·정양석 의원(11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16.12.06. 제안
2017.02.16. 상임위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소위원회
2017.02.22. 상정
2017.11.30. 상정
2017.12.06. 상정
2019.03.18.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
2019.08.14.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

제안이유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타 금융업 관련 법률에서는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며, 약관에 관한 일반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3)」에서도 표준약관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에는 표준약관 작성 관련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표준약관을 작성하고 있음. 이에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표준약관의 작성주체, 절차 등을 다른 금융업과 동일한 체계로 정비하여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표준약관의 작성 및 신고의 절차 및 방법(안 제127조 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

1) 보험협회가 표준약관을 정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함
2) 보험협회가 표준약관을 제정 및 변경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3) 금융위원회는 신고받은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4) 금융위원회는 표준약관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보험계약자 등 권익을 침해할 경우 보험협회에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관계기관 의견

국회사무처

업권 간 형평성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른 금융업권의 경우 해당업법에서 사업자단체인 각 협회가 표준약관을 작성하도록 규율하는 것과 달리, 보험업권에서는 금융감독원이 표준약관을 직접 작성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개별 보험사는 상품개발시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사전신고 후 판매가 가능함.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율하더라도 표준약관은 민간영역의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작성토록 하여 상품개발 측면에서 자율과 책임 원칙에 보다 부합된다고 생각됨.

금융·보험 관련법상 표준약관 규율 비교

구 분	보험업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작성 주체	· 보험협회	· 금융투자협회	·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제정 절차	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 ② 금융위 사전 신고	① 협회단독작성 ② 금융위 사전 신고 (전문투자자 예외)	① 협회단독작성 ② 금융위 사전 신고	〈좌동〉
공정위 협의	① 금융위가 공정위에 통보 ② 공정위는 필요시 금융위에 시정요청. 금융위 고시로 정한 특별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함	① 금융위가 공정위에통보 ② 공정위는 필요시 금융위에 시정요청.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좌동〉	〈좌동〉
변경 명령	· 금융위원회에 변경명령권 부여	〈좌동〉	〈좌동〉 (단, 변경명령전 공정위와 사전협의 필요)	〈좌동〉 (단, 변경명령전 공정위와 사전협의 필요)

(자료:국회사무처)

SAMPLE

주요발언

김병욱 위원(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보험의 표준약관 작성 주체를 변경하는 목적이 금융업권 간의 형평성 그리고 시장의 자유와 창의력 제고, 두 가지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금융상품이라도 은행의 상품과 금투의 상품과 보험상품은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금융상품이고 금투협이다, 여신협이다, 저축은행중앙회다, 그리고 보험협회다, 이렇게 같은 금융으로 보면 안 된다고 보고 보험이 갖고 있는 복잡성, 장기성 그다음에 재해에 따른 보상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은행상품과는 차이가 너무나 크다. 거기에 저는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른 협회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자유와 창의력 제고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려고 있는 게 표준약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의 창의와 자유는 개별 약관에서 탄생이 되는 거지요. 개별 약관은 지금도 개별 회사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표준약관은 기본적인 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표준약관이고 개별 약관에서 회사의 다양한 창의력과 상품의 독특함이 나타나고 있는데 굳이 표준약관을 감독원에서 협회로 내리는 것이 무슨 상품의 창의력과 자율성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의 진흥,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한편에 또 우리 금융소비자의 보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금융상품을 둘러싼 민원이 아직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융 분쟁에 있어서 60~70% 차지하고 있는 마당이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데 굳이 상황 변화가 없는 이 시기에 표준약관의 제정 권한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험협회로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실익이 있는지…… 저는 아무 실익이 없다고 보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보험가입자나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불신만 더 높이고 논쟁만 격화시키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논의하고 몇 개월 동안 생각을 해 봤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그런 계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학영 위원(더불어민주당)



저도 원칙적으로는 김병욱 위원하고 같은 생각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보험상품이 너무나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소비자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특히 약관 해석을 둘러싸고 오랜 시간과 분쟁이 일어나서 그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서. 그런데 금감원이 해도 사실은 지금 그런 사례가 나서 참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험협회로 바로 내려 버리면 금감원에 있을 때도 저렇게 힘들었는데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신뢰 장치를 만들어서 단기간, 몇 년 동안 실험을 한번 해 보고 그 이후에 다음 단계로 실현해서 '이런 장치가 괜찮네' 하면 전체적인 약관 제정권을 내린다랄지 좀 완충적인, 절충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는 없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일종 위원(자유한국당)



저도 원칙적으로는 김병욱 위원하고 같은 생각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보험상품이 너무나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소비자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특히 약관 해석을 둘러싸고 오랜 시간과 분쟁이 일어나서 그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서. 그런데 금감원이 해도 사실은 지금 그런 사례가 나서 참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험협회로 바로 내려 버리면 금감원에 있을 때도 저렇게 힘들었는데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신뢰 장치를 만들어서 단기간, 몇 년 동안 실험을 한번 해 보고 그 이후에 다음 단계로 실현해서 '이런 장치가 괜찮네' 하면 전체적인 약관 제정권을 내린다랄지 좀 완충적인, 절충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는 없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상욱 위원(바른미래당)



자동차보험처럼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보험 소비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품이라든지 또 분쟁이 높은 장기성 보험 상품 같은 것은 금감원이 현행대로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협회에서 작성을 하게 하고 검토하고 표준약관을 확정하는 것은 금감원에 그 기능을 주고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김병욱 위원님의 그런 우려도 불식을 시키고 김종석 위원장님의 그런 행정 규제 완화를 시키는 것도 단계별로 하는, 너무 복잡한 가요?

정무위원회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3044
제 안 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김상희·김영주·김해영·민병두·박광온·박남춘·송영길·유은혜·정성호·최인호 의원(11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1인) **무소속** 이찬열 의원 (1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16.10.28. 제안
2017.02.1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소위원회
2017.02.21. 상정
2017.11.28. 상정/축조심사
2017.12.05. 상정
2017.12.21. 상정/축조심사
2019.08.20.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

제안이유

한국 사회에는 갑(甲)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한 횡포가 만연하고 있음. 이러한 갑(甲)의 불공정한 횡포와 을(乙)의 열악한 처지와 피해 실상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경악과 분노가 들끓고 있음.

한편, 갑(甲)의 불공정한 횡포 가능성이 높은 하도급거래 분야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부분적인 진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임.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고발에 대한 독점적 규제권한을 갖고 구조적인 인력부족의 문제 등으로 인해 불공정한 횡포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원만한 조정을 유도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규제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하도급거래 분야에서의 갑(甲)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조사 및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규제 권한 중 일부인 조사권, 고발요청권, 조정권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개방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권한의 위임 · 위탁' 조항에서도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있음. 현행 공정거래법 제65조 '권한의 위임 · 위탁'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권한의 위임 · 위탁 조항'은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198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던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를 뒷받침하는 '대통령령'의 구체화를 하지 않았기에 유명무실해진 조항을 법률을 통해 되살리는 의미도 가지고 있음.

이와 같이 조사권 · 고발요청권 · 조정권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위임할 경우 우월적 지위를 갖는 갑(甲)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예방은 물론 신속한 조사와 신속한 조정이 이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음.

주요내용

가.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제1항).

나. 시·도지사가 조사 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의·의결에 회부하여야 함(안 제22조 제4항 신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도지사가 회부한 사건에 대해 보고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함(안 제22조 제5항 신설).

라.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현행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단체로 제한되어 있는데, "시·도"에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제1항).

마.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현행은 공정거래조정원에 국한되어 있는데,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24조 제6항).

바.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민법」 제170조에 따른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것으로 봄(안 제24조의4 제7항 신설).

사. 분쟁당사자 간에 작성된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24조의5 제1항).

아.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역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제5항).

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제5항 신설).

SAMPLE

관계기관 의견

국회사무처

현행법은 조사권, 고발요청권, 조정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 주요 내용

내용	현 행	개 정 안
조사권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
시정조치·과징금의 행정처분 권한	· 공정거래위원회 전체회의	· 공정거래위원회 전체회의 (단, 시·도지사의 조사 결과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회부할 수 있음)
과태료 부과권한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
고발요청권	· 검찰총장,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 검찰총장,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시·도지사

(자료:국회사무처)

주요발언

김용태 위원(자유한국당)



저는 이것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도급거래라 함은, 하도급거래업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 법안이 제정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원사업자와 하도급사업자 간에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분쟁이 일어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문제를 개입해서 처리하라고 하는 게 이 하도급법의 원 취지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하도급법에 의해서 벌어지는 하도급 관련 계약이 얼마나 다기하고 얼마나 많은 종류의 하도급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국가기관이 전담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라고 하는 것이 하도급법의 가장 중요한 제정 취지일 텐데, 그런 차원에서 사적 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계약 관계를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처리하는 게 맞지, 단지 그냥 지방에는 이게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까 시·도지사한테 공정위의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물론 이게 분쟁조정협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강제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이게 벌써 조정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만약에 정말 시도에 이게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수요만큼 제대로 분쟁조정하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공정위가 그 거점별로 지원을 설치하든지 현재 설치돼 있는 지원에 대한 인력 규모나 기구 등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서 대응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위원(더불어민주당)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뭐냐 하면 이게 하세월입니다, 하세월. 그러니까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구들을 좀 하면 그야말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추혜선 위원(정의당)



사실 분쟁당사자들이 저희 의원실에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조정을 해 줄 창구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사무소도 있지만 공정위로 다, 서울로 이렇게 몰리지만 말씀대로 하세월이다, 그리고 조정의 적기를 다 놓친다. 그리고 또 어떤 힘의 원리가 작용을 해서 힘이 센 사람들은 그냥 버티면 된다,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창구를 늘린다는 부분, 그리고 각각의 지자체에서 지역의 분쟁이 계속 지속이 되면 지역사회에 큰 문제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오히려 지자체에서 분쟁조정을 하면 더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크게 이견이 없으면 이 부분은 좀 빨리 통과를 시키면 좋겠다 싶은데요.

김용태 위원(자유한국당)



지금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하도급에 대한 분쟁이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계속 신속성을 얘기하는데 신속성은 유의동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 일관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문성……

지금 부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스스로 기관에 대한 모욕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런 게 제대로 빨리빨리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인원이 적은 것 말고도 무언가 기관에 대한 불신 얘기를 스스로 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해철 위원(더불어민주당)



그러면 뭐 하려고 이런 제도를 두느냐? 당사자끼리 다방에서 만나서, 찻집에서 만나 가지고는 도저히 이야기가 안 되니까 그래도 제삼의 기관이, 그분이 시인이든 농부든 법조인이든 그 사람 앞에서 했을 때는 조정을 해 오더라. 수십 년, 수백 년간 해 왔던 분쟁의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본질에도 안 맞고…… 그러니까 조정에 대한 본질에 저해되는 그런 논리일 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형평성 차원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을, 사업자단체 산하에 있는 협의회를 광역시도에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일부 의사가 왜곡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한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SAMPLE

국토교통위원회

1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8989
제 안 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김상희·김현권·박정·박재호·박홍근·안호영·윤일규·윤후덕·이용득·이원욱·제윤경·최인호 의원(13인)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1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19. 03. 06. 제안
2019. 03. 07. 상임위 회부
2019. 03. 28. 상임위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소위원회
2019. 08. 22. 상정/축조심사

제안이유

항공운송사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항공운송사업자의 행위가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를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여타 사업 분야와는 달리 고도의 전문성과 경영능력 및 공공성이 요구되는 분야임.

그러나 최근 일부 항공운송사업자는 국가로부터 받은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사업주 및 관계인의 사적인 편의를 증진할 목적으로 사용하여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각별히 요구되는 공공성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나아가 국가 이미지 및 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공공성을 재확인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운송사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범죄를 행한 자의 임원 재직을 제한하는 등 항공운송사업 경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신규 운수권 배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 운수권 배분 및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며, 항공운송사업자 및 임원의 위법사유에 대한 제재를 다양화 하고 그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항공운송사업 면허관리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의 공공성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가 이미지 및 신인도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항공운송사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죄를 범한 자의 임원 재직 제한을 강화하고, 계열 항공사 간 임원 겸직을 제한함(안 제9조 및 제9조의2).

나.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신규 운수권 배분을 일정기간 제한함(안 제16조).

다. 독점노선의 운수권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노선의 운임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하여 필요시 사업개선 명령을 하고 미이행시 해당 운수권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라. 항공운송사업자 및 임원의 위법행위별 행정제재 수단을 다양화 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주요발언

김상훈 위원(자유한국당)



안호영 의원님의 법안 내용은 제가 듣기로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고민을 십분 이해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법안 내용을 봤을 때는 타 법에서 두고 있지 않은 과잉규제의 내용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다, 예를 들면 해운·철도·육상교통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두지 않은 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강한 내용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 보입니다.

…… 우선 항공사업법에 그 해당 임원의 결격사유가 타 법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그 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항공사업법에서 별도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이중규제와 관련된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자연인인 임원의 사회적 물의 행위에 대해서 항공사업권에 관련된 제재를 취하는 게 다른 외국에도 이런 입법례가 있는 것인지, 자연인의 처벌과 항공사의 운송사업권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분리돼야 되는 게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자유한국당)



특정 항공사가 이번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탄받고 그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과도하게 이렇게 할 때 다른 문제는 없겠는지. 그 다음에 벌금도 지금 50억에서 매출액의 3%로 이렇게 가 있는데 …… 우리 당 송석준·민경욱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 중심으로 한번 공청회를 연다든지 해서 그런 수렴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안 의원님 원안 또는 정부 측이나 전문위원 검토수정안을 다 포함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SAMPLE

정무위원회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최운열의원 등 10인)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1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각 제정안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자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를 그 기능 및 유형별로 각각 재분류·체계화하여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하도록 하고, 금융관련 분쟁 발생 시 소송중지제도 등을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사후 구제절차를 강화하는 등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산재한 판매행위 규제, 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것임.

최운열 의원안	이종걸 의원안	정부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및 연불판매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상품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상품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할부금융 및 연불판매 상품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및 할부금융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쟁점1-1. 금융상품의 범위

- 금융상품의 범위는 금융상품판매업 등의 개념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므로 곧바로 제정안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됨
- 각 제정안에서 새마을금고·우체국·농협·수협 등이 판매하는 예금·대출·보험상품 등의 판매행위를 별도로 열거하지 않고 있어 이들 상품이 금융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정부안·이종걸의원안은 제1호 마목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기술사업금융"을 제외하고 있으나 최운열의원안의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을 포함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쟁점1-2. 새마을금고·우체국 등 유사금융의 법 적용대상 포함 여부

-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은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제정안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사실상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규가 적용되지 않게 되면 소비자보호에 공백이 생기고 법규 미적용 기관에게는 규제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에 따른 영업행위 규제가 강화될수록 그 격차가 커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을 포함한 유사금융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쟁점1-3.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의 법 적용대상 포함 여부

- 신기술사업금융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한 신기술사업 육성이라는 목적으로도 운용되고 있음. 위 목적을 감안할 때, 최운열의원안과 같이 이 법 적용대상에 신기술사업금융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금융상품 간 규제차익을 해소한다는 장점과 법상 규제 적용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SAMPLE

최운열 의원안	이종걸 의원안	정부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이하 "금융상품판매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금융 관련 법률 및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쟁점2-1.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입법방식은 ①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것과 ②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것, ③ 이 두 가지 방식을 절충하는 방식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입법방식 중 어떠한 것을 채택할 것인지는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와 우선적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쟁점2-2. 제1항의 "우선적용" 여부

- 법조항 상호간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 법률해석 방법인데, 우선적용은 이에 대한 예외인바 제정안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려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강력한 보호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이에 대하여 기본법은 다른 특별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으나,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을 위한 기본법이라는 의미는 이 목적을 위한 다른 특별법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완결된 법이라는 의미이므로 기본법-특별법의 적용순위 논리를 원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임.

SAMPLE

정무위원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 관련 제도개편

김병욱 의원안은 ① 현재 운용방식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구분되고 있는 사모펀드 분류기준을 변경하여, 투자자의 범위에 따라 "기관전문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로 구분하도록 하되 기본적인 운용규제는 일원화하고, ② 기관투자자만이 참여 가능한 기관전문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되, 관련 규제는 완화하여 투자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하며, ③ 사모펀드 투자자 요건을 완화(49인 이하→100인 이하)하려는 것임.

1. 개념

① 펀드의 구분

- 자본시장법상 펀드는 크게 사모펀드와 공모펀드로 구분됨. 사모펀드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私募)방식으로 발행(일반투자자의 청약권유자 수가 49인 이하인 증권 발행)하고 투자자의 총 수가 49인 이하인 것을 의미하며, 이 외에는 공모펀드로 구분됨.

② 사모펀드의 구분

-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로 구분됨.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펀드로, 출자금의 50% 이상 주식투자(2년내) 의무,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의무, 취득주식 6개월 이상 보유 의무, 대출 금지 등의 운용규제가 적용됨.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제외한 사모펀드를 통칭하며, 지분 보유 의무가 없고 운용규제는 대폭 완화된 반면, 보유주식 중 10%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공모펀드 및 사모펀드 관련 규제 비교

구 분		공모펀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없음	1억 이상 개인, 전문투자자 등	3억 이상 개인, 전문투자자 등
운용 주체		인가 운용사	등록 운용사	등록 GP
펀드 설정		등록	사후보고	사후보고
운용제한	금전차입	X	O (순재산의 400%)	· 주목적 투자규제 – 출자금 50%이상 주식투자(2년내) – 투자대상기업주식 10% 이상 취득 등 · 계열회사 거래 제한 등 – 대기업집단 소속 PEF의 기존 계열사 주식 취득금지 – 투자대상기업을 계열사로 취득 시 5년 이내 처분
	파생상품	O (자산총액의 100%)		
	채무보증/담보제공	X		
	금전대여	X	O	
	최소투자 한도	펀드종류별 주요 투자대상자산에 50%이상 투자	제한 없음	
자산보관관리위탁		O	O	O
판매보수·수수료 제한		· 판매수수료 : 납입금액(또는 환매금액)의 2% 이하 · 판매보수 : 펀드재산 연평균가액의 1% 이하	제한 없음	–
성과보수		· 원칙 : 수취불가 · 예외 : 기준지표와 연동된 보수체계 등 요건 충족	제한 없음	–

(자료 : 금융위원회)

SAMPLE

쟁점1. 사모펀드 규제 일원화

① 타당성

- 사모펀드 관련 규제체계가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로 이원화되어 사모펀드가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제공하는 데 제약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② 문제점

- 사모펀드 관련 규제 완화로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주로 참여하는 공모펀드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투자자 보호 수준이 저하될 수 있음.

현행법 및 개정안의 사모펀드 체계 비교

구 분		현행법		개정안
		공모펀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제한	지분보유 의무	해당 없음	- 출자금 50% 이상 2년내 주식 투자 -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 취득 주식 6개월 이상 보유	**규제 폐지**
	의결권 제한	보유주식 중 10%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해당 없음	**규제 폐지**
	차입	**- 순재산 400% 이내** (금전차입, 대여, 채무보증, 파생상품 투자 등)	- PEF재산 10% 이내 (단, SPC 활용시 SPC 자기자본의 300%까지)	**- 순재산 400% 이내** (금전차입, 대여, 채무보증, 파생상품 투자 등)
	대출	- 대출 가능 (단, 개인대출 금지)	- 대출 불가	**- 대출 가능** (단, 개인대출 금지)

(자료 : 금융위원회)

쟁점2. 지분보유 의무(경영참여형) 및 의결권 행사제한(전문투자형) 의무 폐지

① 타당성

- 사모펀드가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투자방식을 활용하여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정별로 보다 적합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② 문제점

- 지분보유 의무 폐지에 따라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금지되었던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개정 후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부동산,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일부 우려도 제기됨.

SAMPLE

교육위원회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개정안은 공공기관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에 대하여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거나 현행 권고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SAMPLE

구 분	현 행	장병완 의원안	박주선 의원안	김부겸 의원안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및 비율 명시	공공기관 일정비율 이상 지역인재 채용 노력	공공기관은 35% 이상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비율을 법률에 명시)	공공기관 일정비율 이상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공공기관은 40%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비율을 법률에 명시)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 일정비율 이상 지역인재 채용 노력	현행과 동일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 일정비율 이상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상시 근로자 수 200인 이상 기업은 40% 이상 지역 인재 채용 노력 (비율을 법률에 명시)
지역인재 채용결과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	신규채용 인원의 35% 이상 지역인재 채용 시 각종 지원 (비율은 시행령에 규정)	현행과 동일하나 비율(35%)을 법률에 명시	신규채용 인원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할 경우 지원 (법률에 비율을 명시)	지역인재 40%이상 채용시 각종 지원 (법률에 비율을 명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반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2015년부터 반영 중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경영실적 평가에의 반영을 법률에 명시

쟁점1.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및 비율 명시

① 타당성

-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한다면,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독려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② 문제점

- 지역인재를 법에서(또는 대통령에서) 규정한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강제한다면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채용이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자에 대한 역차별에 따른 위헌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관계기관 의견

헌법재판소

-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공공기관과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청년 미취업자(15~34세)를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5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의견 제시함. 청년할당제는 고용영역에서의 불합리한 연령차별금지라는 우리 법체계의 기본질서와 부합하지 않고, 과거의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시정하고 이를 보상해 주기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도 아니며, 동등한 처지에 있는 다른 연령 집단의 취업기회를 박탈하거나 잠식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이었음.

쟁점2. 지역인재 채용결과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

① 타당성

-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전체 공공기관의 평가지표에 반영하도록 한다면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② 문제점

-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모든 기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각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정산기간이 종료되어야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게 되므로[4] 정산기간을 임금 산정기간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근로자의 임금보장을 위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임.

SAMPLE

국토교통위원회

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범죄를 행한 자의 임원 재직을 제한하는 등 항공운송사업 경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신규 운수권 배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 운수권 배분 및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며, 항공운송사업자 및 임원의 위법사유에 대한 제재를 다양화하고 그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항공운송사업 면허관리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쟁점1. 결격사유의 강화

① 타당성

- 항공운송사업은 국가기간망인 공항을 이용하고, 정부의 외교활동을 토대로 획득한 운수권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며, 경제발전 및 국제교류를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의 기반이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강한 공공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서 특허제로 운영되고 있음.
- 항공운송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 및 그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타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해당 산업에 요구되는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범죄경력자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범죄경력자의 임원 제한 입법례 참조)

범죄경력자의 임원제한 입법례

분야	위반법령			선고수준	제한기간
	해당법	관련법	형법, 관세법 등		
항공운송사업	○	○	(현행) × (개정안) 관세법, 형법,공정거래법 등	벌금형	2년 (신설)
				금고 이상	5년
1. 형법 위반을 임원제한 사유로 둔 경우					
건설업	○	–	형법 (수뢰, 뇌물제공)	금고 이상	5년
	–	–	주택법		3년
정보통신공사업	○	–	형법 (내란·여적·간첩) 국가보안법	금고 이상	3년
도시가스사업 전기공사업 전기사업	○	○	형법 (전기·가스유출)	금고 이상	2년
2. 관세법 위반을 임원제한 사유로 둔 경우					
항만운송사업	○	×	관세법 (밀수출입, 관세포탈)	금고 이상	3년
3. 벌금형을 임원제한 사유로 둔 경우					
전기통신사업	○	○	–	벌금형	1년
				금고 이상	3년
금융업 (은행업, 보험업, 여신전문업 등)	○	○	–	벌금형	5년
				금고 이상	5년
국제물류주선업	○	○	–	벌금형	2년
				금고 이상	2년
방송법	○	–	–	벌금형	3년
			형법 (내란 관련 폭동·선동·음모 등)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 구성 등)	금고 이상	형 집행기간
신문법	○	–	–	벌금형	2년
		○	형법 (내란 관련 폭동·선동·음모 등)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 구성 등)	금고 이상	1년
할부거래법	○	–	–	벌금형	3년
	모든법			금고 이상	5년

SAMPLE

범죄경력자의 임원제한 입법례					
4. 임원제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 경우					
건설업	○	–	형법 (수뢰, 뇌물제공)	벌금형	5년
			주택법	금고 이상	3년
금융업 (은행업, 보험업, 여신전문업 등)	○	○	–	벌금형	5년
				금고 이상	5년
할부거래법	○	–	–	벌금형	3년
	모든법			금고 이상	5년
5. 기타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소방시설공사업 해상여객운송사업	○	○	–	금고 이상	2년
관광사업 궤도사업 집단에너지사업 석유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	징역 이상	

(자료: 국회사무처)

- 「관세법」 위반의 경우 항공운송사업과 관련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유사입법례인 「항만운송사업법」에서도 「관세법」 위반을 항만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로 하고 있음. 개정안은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와 제270조(관세포탈죄) 위반만을 결격사유로 하고 있는데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도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라고 보이므로 결격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법」 위반의 경우 항공운송사업자가 지상 조업사 등 항공 관련 사업자와의 지위에서 사실상 수요과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로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고, 이는 항공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며 비정상적 계약으로 인한 지상조업 부실을 야기하여 안전 및 소비자 권익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격사유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② 문제점

- 결격사유 규정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므로 해당 결격사유의 취지와 대상 자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반사실과 자격 간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형법」 상 '상해와 폭행의 죄'를 결격사유에 추가한 것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저지른 범죄까지 법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법인의 입장에서는 대표자나 임원의 형사 처벌 여부를 항시 감독하여야 면허 취소 등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결격사유 중 형법 상 '상해와 폭행의 죄'를 추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세범 처벌법」을 결격사유에 추가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조세포탈의 방지라는 행정목적과 항공운송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 간에 명확한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결부금지 원칙'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관계기관 의견

헌법재판소

- 모든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건설업 결격사유로 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4호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음

SAMPLE

쟁점2. 계열사 임원 겸직 제한

① 타당성

- 항공운송사업은 특허산업 분야로서 신규진입이 제한적인 특성상 건전한 경쟁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고, 특정인이 FSC와 LCC의 임원을 겸직할 경우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LCC가 모기업인 FSC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공격적 마케팅을 지양하는 등 항공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사업자들 간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고, 항공운송시장의 경쟁촉진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을 추구하려는 취지로 보임.

② 문제점

- 항공운송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제가 이뤄지고 있고, 공정거래법은 계열사 간 임원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계열관계가 없는 항공사 간 겸직이나 비항공 계열사 간 겸직은 제한하지 않으면서 항공사인 계열회사 간의 겸직만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세계 항공운송산업 시장에서 국적 항공사들의 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국적사 간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겸직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쟁점3. 운수권의 회수

① 타당성

- 개정안은 운수권 회수라는 수단을 통해 사업개선명령의 이행을 유도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대표자나 임원의 선임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② 문제점

-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대표자나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현행 규정으로도 면허 취소나 영업 정지가 가능하여 이행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실제로 최근 3년 간 사업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는 없었음.
- 운수권 회수가 가능한 현행 요건들을 살펴보면 해당 노선을 폐지하거나, 운수권을 배분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노선을 취항하지 않거나, 해당 노선을 취항한 후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모두 특정 노선의 문제점을 이유로 그 노선의 운수권을 회수하는 것인 반면,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정 노선의 문제와 결부된 것이 아니며 어떤 노선의 운수권을 회수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음.
- 특정 노선의 운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노선의 운수권이 회수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으며, 재량의 남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쟁점4. 면허관리를 위한 제재수단의 다양화 및 과징금 인상

① 타당성

- 현행은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하지 않는 한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는 항공운송업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심대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보다 탄력적인 제재수단으로서 과징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현행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위반행위와 사업의 종류별로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 위반기간이나 법규위반으로부터 얻어진 경제적 이익의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 산정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문제점

- 안 제28조 제1항 단서는 항공운송사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 또는 등록을 "당연취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추가된 결격사유 중 「관세법」과 「조세범 처벌법」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게도 위반한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법인의 대표자가 「관세법」과 「조세범 처벌법」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면허 등이 "당연취소"될 것으로 보임.
-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바꾸어 임명하기만 하면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 안 제28조 제1항 제4호의2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음.
- 항공관련법령의 위반과 관세법·조세범 처벌법의 위반은 중대성에 있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관련법령의 위반과 동일하게 관세법·조세범 처벌법의 위반을 면허의 당연취소 사유로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SAMPLE

SAMPLE

B&B Report

SAMPLE

Ⅱ. 상임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3. 법률안 비교 · 분석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정무위원회		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12호폐지법률안
		1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3.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27. 민주화추진협의회 유공자 단체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1.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SPECIMEN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정무위원회		3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예금동결의 일부해제 폐지법률안
		4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46.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4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48.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57.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58.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5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6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7.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8.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69.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교육위원회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AMPLE

정무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0153
제 안 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김현권·남인순·박찬대·서삼석·신창현·심기준·윤호중·임종성·조승래·조정식 의원(11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1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19.05.02. 제안
2019.08.2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산업합리화, 불황의 극복, 거래조건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지 않고 있음.

그런데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들 간의 상생협력 과정이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음.

주요내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활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 사항으로 규정하여 공정경제의 실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 제2항 제7호 신설).

관계기관 의견

공정거래위원회

개정안과 같이 공동행위 인가 사유에 상생협력 활동을 별도로 규정하게 되면, 이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허용되고 있는 합법적 공동활동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반대함.

국회사무처

부당한 공동행위는 위·수탁기업과 같이 수직적 계약관계에 있는 사업자들 간에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담합을 형성하여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회피할 유인이 있는 수평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임을 고려하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를 두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해외의 공동행위 예외 현황

국 가	근 거	근 거
미국	관련 특별법 및 가이드라인	① 농업조합의 공동판매 허용. 단, 농무부장관은 농업조합의 부당한 가격 인상 등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 가능 ② 시장점유율이 20% 미만인 경우 공동행위의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나, 경성카르텔은 제외
EU	EU기능조약	① 공동행위라 할지라도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그로 인한 이익이 소비자에게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음 ② "안전지대규정"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낮은 경우(수평적 합의 10%, 수직적 합의 15%)에는 담합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며, 다만 가격·수량 등 경성카르텔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① '경쟁제한의 정도가 상당한 수준이 아닐 것'이라는 조건 하에 중소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담합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② 효율성을 제고하는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는 허용되나, 가격·생산량 할당 합의는 제외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SAMPLE

정무위원회

5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민병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8120
제 안 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김영주·문희상·민병두·박용진·박정·신창현·정성호·한정애 의원 (9인)
국민의당 박준영·이찬열 의원 (2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17.07.20 제안
2018.02.2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소위원회
2018.11.23. 상정/축조심사
2019.03.18. 상정
2019.08.14.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상임위원회
2019.08.2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온라인상에서 개인간 직접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P2P(Person to Person 또는 Peer to Person) 금융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개인간 대출거래의 성장세는 폭발적임.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P2P 대출업체의 누적대출액은 2016년 6,289억원에서 2017년 4월말 1조 1,298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태임.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한 개인간 대출거래는 여러 법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P2P 대출거래에 대한 법제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대출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온라인대출중개업을 영위해야 함(안 제6조).

다.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 온라인대출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함(안 제7조).

라. 온라인대출중개업자가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1조).

마. 온라인대출중개업자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해서는 아니 됨(안 제12조 제3항).

바.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 투자권유의 요청을 하지 않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해서는 아니 되고,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투자권유를 해서는 아니 됨(안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사.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수집,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안 제17조).

아.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 온라인대출중개업 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안 제18조).

자. 온라인대출중개업의 업무 질서를 유지하고 온라인대출중개업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대출중개업협회를 설립함(안 제23조).

차. 금융위원회는 온라인대출중개업자를 감독해야 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금융감독원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카. 금융위원회는 온라인대출중개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29조).

타. 금융위원회는 온라인대출중개업자가 차입자의 대출한도 또는 투자자의 투자한도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30조).

관계기관 의견

p.77-78 법률안 비교·분석 참고

SAMPLE

주요발언

〈소위원회〉
김성원 위원(자유한국당)



P2P 시장에서 차주와 대출,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 법안은 진짜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를 해야지 되는, 꼭 처리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요.

이게 일종의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 당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하는 방안도 있지 않나 싶은 것이 저는 최저자본금 부분이거든요.

최저자본금 부분을 일종의 단순 중개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P2P 대출업체의 업무 특성을 감안할 때 자기자본 요건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글쎄요, 저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그 수준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태옥 위원(자유한국당)



우리나라가 금융이 별로 활성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관치금융 때문이다,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7억으로 됐을 때…… 사실 P2P 시장이 200개 이상 업체가 있고 이만큼이라도 성장한 가장 큰 이유가 정부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됐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보면 최저자본금을 10억이나 해 버리고 그리고 또 법령 안에 보면 P2P법은 이 법에 따라 가지고 인가인가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일체 못 하도록 돼 있고 벌칙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즘, 제4차 산업혁명 정부에서 활성화시킨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한 규제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한 3억 원 수준으로, 그것도 최소자본금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김병욱 위원(더불어민주당)



새로운 우량주들을 영입한다든지 그리고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또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금융은 기본적으로 규제적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금융이 잘못됐을 때의 파급력이랄까 시장에 주는 충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융산업 자체에 자기 규제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본금은 정부안으로 10억 정도는 해 놓는 것이, 그래도 이게 P2P 업체를 법제화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규제도 있고 또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되지, 너무 이것을 낮춰 놨을 때는 난립이 되고 또 혹시 그러면서 P2P 업체가 잘못 영업이나 운용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제고되면 법 개정 자체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한 10억 정도의 자본금을 가져가는 것이 그래도 소비자에 대한 신뢰 구축과 재무구조의 건전성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SAMPLE

정무위원회

6-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의안번호 2013919
제 안 자 정부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18.06.15. 제안
2018.11.2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소위원회
2018.11.23. 상정/축조심사
2019.03.18. 상정
2019.08.14.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원안가결)

상임위원회
2019.08.2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심사보고/의결(원안가결)

법제사법위원회
2019.08.26. 회부

제안이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내 자산운용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국내에서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대한민국 정부와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외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임원 및 운용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변경등록하도록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사유를 정하고,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설정·설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관계기관 의견

금융위원회

외국의 패스포트 펀드는 국내 판매사(은행, 증권사 등)를 통해 판매될 예정으로 판매 규제상 위법행위 발생 시 국내 판매사가 제재대상이 되며, 펀드 설정국에서 30% 이상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설정국의 관리·감독이 전제되는 바, 국내 펀드에 비해 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소지 등은 크지 않을 것이기에 찬성함.

국회사무처

펀드 패스포트제도 도입시 투자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해외투자를 통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져 찬성함. 다만 국내 자산운용시장이 위축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함.

역외펀드와 패스포트 펀드 비교

구 분	기존 역외펀드	패스포트 펀드
판매 대상 펀드	· 판매국이 정한 적격펀드만 판매국에 판매가능	· 판매국 요건과 관계없이 패스포트 공통규범을 충족한 펀드라면 판매가능
판매국 등록 절차	· 판매국 감독당국이 운용사 요건, 운용규제, 판매규제 준수여부 등 모든 요건을 상세히 심사	· 판매국 감독당국은 투자자보호 등 판매규제 준수여부를 중심으로 심사 * 운용사 요건, 운용규제 준수여부 등은 설정국 감독당국의 심사를 거치므로 약식심사

역외펀드 대비 패스포트 펀드의 요건 완화예정 사항

구 분	기존 역외펀드	패스포트 펀드
펀드 설정국 기준	· OECD 회원국, 홍콩, 싱가포르	· ARFP 회원국 * 대만 등 기존 역외펀드 규제에서 허용되는 펀드 설정국이 아닌 국가에서 ARFP에 참여할 경우 우리나라에 펀드 수출 가능
운용자산 기준	· 최근 사업연도말 운용자산규모 1조원 이상	· 등록신청 당시 미화 5억 달러(약 5,600억원) 이상
자본금 기준	· 증권형펀드 최소자기자본 40억원 이상	· 미화 1백만 달러 이상 (단, 수탁고가 5억 달러를 초과할 경우 5억달러 초과분의 10bp씩 추가)

(자료: 금융위원회)

SAMPLE

정무위원회

6-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의안번호 2020250
제 안 자 정부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19.05.09. 제안
2019.08.2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안이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투자운용인력의 운용 성과 및 보상체계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자기자본 등의 요건을 면제하며, 창업 후 7년이 지난 중소기업도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발행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투자일임업자는 별도의 등록 없이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발행인 범위의 확대(안 제9조 제27항 제1호)

나. 현재 창업 후 7년 이내인 창업기업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나, 업력(業歷)과 무관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발행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시장으로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함.

다.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 없이 허용(안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0조 후단 신설)

라.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성격상 투자자문업의 내용을 포섭하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한 자는 투자자문업을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을 함께 영위하는 자가 투자일임업에 대한 등록요건을 유지하면 투자자문업에 대한 등록요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봄.

마.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공시(안 제91조 제4항 신설, 안 별표 1 제102호)

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투자운용인력의 운용 성과 및 보상체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방법 및 주기에 따라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함.

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 완화(안 제249조의1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i. 현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려면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을 갖추어 별도로 등록하여야 함.

ii.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자기자본, 임원 및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면제함.

아.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운용 허용(현행 제249조의2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삭제)

자.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도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운용할 수 있도록 함.

SAMPLE

관계기관 의견

국회사무처

투자중개업자 규제들의 취지는 대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통해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제한하거나(금산법), 고객의 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본시장법),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려는(지배구조법) 것인 반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경우 업무범위가 온라인상에서의 청약권유 및 전달, 홍보 등 단순 중개행위로 한정되어 있으며 투자자 재산의 보관·예탁이 금지되어 있어 일반적인 투자중개업에 비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투자중개업자로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크라우드펀딩 및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와 투자중개업자 간 규제 비교

법률	구 분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투자중개업자
자본시장법	진입요건(§117의4)	· 등록제(형식요건 확인)	· 인가제(실질내용 심사)
		· 최소자기자본 5억원	· 최소자기자본 30억원
	재무건전성(§30)	· 적용 배제	· 영업용 순자본기준 준수
	경영건전성(§31)	· 적용 배제	· 자기자본비율, 유동성 등 기준 준수
	영업행위규제	· 불건전영업행위 금지(이해관계 미공지 등) 외 대부분 배제	· 투자권유 규제 등 모두 적용
	업무보고서(§33)	· 분기별 제출	· 월별 제출
	부수업무(§41)	· 부수업무 영위시 금융위 신고	
	업무위탁(§42)	· 업무 위탁시 금융위 보고	
	임직원 매매(§63)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금산법	다른회사 주식소유(§24)	· 일정규모 이상의 타법인주식 취득시 금융위 승인, 출자대상회사 제한	
	합병(§4)	· 합병시 금융위 인가	
지배구조법	대주주변경(§31)	· 금융위 보고	· 금융위 승인
	준법감시인(§25)	· 적용 배제	· 임면 의무
	위험관리(§27,28)	· 위험관리기준 마련 · 위험관리 책임자 임면 의무	
	겸직제한(§10)	· 임원 등의 다른 영리법인에 대한 겸직제한	
금융실명법	실명확인(§3)	· 증권 중개시 거래자의 실명확인 의무	

(자료: 금융위원회)

SAMPLE

환경노동위원회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측정값 조작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음. 이에 사업자가 자가측정에 대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각각 상향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 기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의원이 대표발의 한 7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정하여 환경노동위원장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으로 발의함.

대안	김동철	김태년	손금주	신창현	윤상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배출량 및 산정 계수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안 제17조 제4항 신설).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계수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	-	-
동일 시설이 초과부과금을 2회 이상 부과받을 때부터 초과부과금의 10배 이내 범위에서 가중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징벌적 부과금 제도 도입 (안 제35조 제4항 후단 신설).	-	-	-	동일 시설이 배출부과금을 3회 이상 부과받을 때부터 초과부과금의 10배 이내 범위에서 가중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징벌적 부과금 제도 도입	-
자가측정 관련 금지행위 위반 시 배출시설의 설치/변경 허가 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안 제36조 제13호의2 신설)	사업자가 배출시설의 금지행위를 위반하거나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것이 2차례 이상일 경우 30일 이상 조업정지를 명하도록 함	-	-	-	-
자가측정 관련 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 제39조 제2항 및 제3항, 제90조 제4호의3 및 제4호의4 신설).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값 조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측정기기 미부착 등 측정기기에 대한 의무규정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자가측정 측정결과 미제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안 제94조 제2항 제1호의2 신설).	-	-	-	-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쟁점1. 자가측정과 관련된 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① 타당성

- 개정안은 배출사업자에 대하여 측정 및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측정값 조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인 바, 대기오염물질 측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환경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SAMPLE

② 문제점

- 개정안의 법정형 상한은 유사한 내용으로 정부가 개정 추진 중(2019. 6. 21. 규제심사 완료, 법제처 심사중)인 개정안 법정형 상한의 5배에 이를 정도로 처벌을 강화한 것인 바, 지나친 법정형(法定刑) 상한은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전체적인 법령 체계에 혼선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형사처벌 강화만으로는 불법행위 근절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이와는 별개로 지방으로 이양된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사업장 관리업무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체계 개선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임.

쟁점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배출량 및 산정 계수 등 각종 정보 및 통계에 대한 검증 체계 구축

① 타당성

- 개정안은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값을 속이는 것은 엄중한 범죄행위인 만큼 이를 근절하고 관련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됨. 안 제17조 제4항을 신설하여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계수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수용한다는 입장

② 문제점

-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조직과 재원의 확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법안심의과정에서는 관계부처 의견 조율 등 정부 전체적인 협의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쟁점3. 동일 시설이 초과부과금을 2회 이상 부과 받을 시 징벌적 부과금 제도 도입

① 타당성

- 개정안은 제35조 제4항 후단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초과부과금 산정이 2회 이상 계속될 때 처벌규정을 가중하도록 하는 일종의 '징벌적 부과금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자 함. 낮은 부과금 단가로 인하여 사업자들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개선의지 또한 크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개정안처럼 초과부과금 산정을 강화하도록 할 필요성도 있음

② 문제점

- 최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과 관리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법안심의과정에서는 적정한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SAMPLE

1. 실정법에 법정형을 아무리 높게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하여 행위의 불법성 평가를 거치고 나면 실제 선고형(宣告刑)은 대개 법정형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음. 개정안과 같이 형사처벌을 강화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면 벌금형을 없애고 법정형의 하한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감안하여야 할 것임.

정무위원회

2.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P2P대출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대출로서, P2P대출산업은 2005년 영국의 Zopa가 최초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미국·영국·중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P2P대출시장의 누적대출액 규모는 2015년 말 373억원에서 2017년 11월말 2조 1,744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기존 금융업과 P2P대출업 비교

비교대상	해당 금융업	P2P대출업
은행업	〈은행법 적용〉 · 은행의 자기자본으로 대출 · 은행이 수신원리금 상환의무 부담	·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대출 · P2P대출업체가 수신원리금 상환의무 부담하지 않음
대부업 여신전문 금융업법	〈대부업법·여전법 적용〉 · 금융회사 자기자본으로 대출 · 이자수익이 금융회사에 귀속	·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대출 · 이자수익이 투자자에게 귀속
대부중개업	〈대부업법 적용〉 · 대부계약 체결 이후에는 대부업자가 채권자 권리행사 · 대부업자에게만 수수료 수취 가능(대부업법 제11조의2)	· P2P대출업체는 대부계약 체결 이후에도 채권추심 및 원리금 배분 역할 · 투자자·차입자 양측에서 수수료 수취 가능
금융투자업	〈자본시장법 적용〉 · 증권·파생상품에 투자 ※ 크라우드펀딩: 채무·지분·투자계약증권에 투자	· 대출채권으로부터의 원리금수취권에 투자

쟁점1. 온라인대출중개업의 법적 구조

① 타당성

- 현재 우리나라 P2P 대출업체는 스스로 대부업체로 등록하여 대출을 실시할 수 없어 100% 자회사인 연계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실시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P2P대출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법적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② 문제점

- 제정안에서는 P2P대출업의 법적 구조를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 없고, 제2조(정의), 제9조(온라인대출계약의 체결 등), 제15조(투자 계약서류 등의 교부) 등에서 법적 구조에 대한 전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 조항에서 온라인대출중개업의 법적구조가 직접대출형, 간접대출형 중 어느 쪽인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쟁점2. 온라인대출중개업의 법적 구조

① 타당성

- 민병두 의원안이 제시한 등록시 자기자본요건 3억원은 대부업법상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 요구되는 자기자본과 동일한 수준임.

② 문제점

- 대부업자는 자기자본으로 대출을 실시하는 반면 온라인대출 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자금을 기초로 대출을 실시하므로 차입자 정보 확인 및 공시, 투자금의 별도예치 등 대부업자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필요함.
-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증권발행 기업에 대한 공시의무를 직접 부담하지 않고 증권발행 이후 배당이나 투자금 상환에도 관여하지 않는 반면,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 대출 신청정보를 확인·게재하고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며, 상환의무 이행점검, 대출금 회수·배분, 채권추심 등 원리금 회수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므로 크라우드펀딩(5억원)보다 높은 수준의 자본금 요건이 설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SAMPLE

쟁점3. 차입자의 대출한도 제한

① 타당성

-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온라인대출의 특성상 대규모 대출이 부실화되는 경우 다수 투자자에게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짐.

② 문제점

- 차입자의 대출한도 제한은 차입자 입장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되는 효과를 가지는 바, 개인차입자 차원에서는 보다 고금리인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시장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법인차입자 차원에서는 부동산PF·문화산업·신재생에너지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음.

쟁점4. 투자자의 투자한도 제한

① 타당성

- 투자한도 제한은 투자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음.

② 문제점

- 투자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음.
- 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한도금액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의 문제가 있으므로 법률에서 한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SAMPLE

정무위원회

3.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 의원안은 제조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발생한 재산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전보를 위하여, 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실손해를 초과할 수 있는 배상책임 대상으로 포함하며, ② 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실손해 대비 배율을 현행 3배에서 10배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구분	현행	동 개정안	신창현안	전재수안	강병원안
제조업자의 결함여부 관련 인식	인식	현행과 동일	인식·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손해 대상	생명·신체 손해	생명·신체·재산상 손해			
실손해 대비 배율	3배 이하	10배 이하	5배 이하	10배 이하	8배 이하

쟁점1. 손해 대상 (생명·신체→생명·신체·재산)

① 타당성

-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제조업자가 좀 더 면밀한 제조상·가공상의 주의를 기울여 제조물을 설계·제조·가공하게 하여 결함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임.

② 문제점

- 재산상 손해는 생명·신체 손해와는 달리 그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 제3조 제1항 제3조(제조물 책임) 및 민법 제750조에 따른 실손해배상으로도 피해자에게 충분한 손해전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쟁점2. 실손해 대비 배율 (3배 → 10배)

① 타당성

- 직접적으로는 피해자의 충분한 손해 전보에 기여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제조업자가 제조물 생산시 좀 더 높은 주의를 기울이고 제조물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인정됨.

② 문제점

- 현재 실손해를 초과하는 배상책임 제도를 두고 있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과 같은 경쟁법 및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 등과 같은 유사 입법례에서는 현행과 같이 발생한 손해의 3배 이하에서 법원이 배상책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쟁점3. 제조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① 타당성

- 결함이 인정되어 제조물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제조업자는 통상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노출되어 경영상 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따라 제조업자의 부도 등이 발생하면 피해자 역시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일정 범위의 제조업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책임보험·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비하여 일부 제조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낮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보상한도가 낮은 보험에 가입한 기업도 적지 않은 등 제조물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기에는 다소 불충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② 문제점

- 제조업자가 책임보험 보험료 부담을 공급원가로 취급하여 시장가격에 반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SAMPLE

③ 참고자료

국내 의무보험 현황

연번	근거법률	주관부처	의무 대상자	보상한도	사업자
1	건설기술관리법	국토교통부	건설사업 관리자,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건설공사의 계약금액	보험회사/공제
2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공사발주자	조항 無	보증회사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결혼중개업자	내용 없음	보험회사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자/사용신고자	〈인명피해〉 사망 시 8천만원(최소2천만원)/ 부상 시 상해급별 **〈재산피해〉 업종별 50억/3억/1억원**	보험회사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	법인 2억원 이상/ 비법인 1억원 이상/ 지역농협 1천만원 이상	보험회사/공제/ 공탁
6	공인회계사법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회계사 1인당 5천만원 이상	보험회사/공제
7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자	5천만원 이상(일반)/ 3천만원 이상(국외)/ 2천만원 이상(국내)	보험회사/공제
8	관세사법	기획재정부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관세사 1인당 1천만원 이상	보험회사/공제
9	궤도운송법	국토교통부	궤도사업자, 전용궤도 운영자	사고당 2억이상/ 1인당 2억이상/ 연간 4억이상	보증회사
10	낚시관리 및 육성법 (舊 낚시어선업법)	해양수산부	낚시 어선업자	사망시 1억(최소2천만원)/ 부상시 상해급별	보증회사
11	노인장기요양법*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종사자	조항 無	조항 無
12	도로교통법 시행령 (견인 등 대행법인)	경찰청	대행법인(견인/보관)	1억원의 범위 안(5천만원 이상)	보험회사/공탁
13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운전학원)	경찰청	운전학원 운영자	손해를 전액 보상할 수 있는 범위	보험회사
14	도시가스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사용/시공자	〈인명피해〉 사망시 8천만원(최소2천만원)/ 부상시 상해급별 **〈재산피해〉 업종에 따라 100억/50억/10억/3억원**	보험회사
1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청	22개 업종 다중이용업주	대인: 사망/후유장해(1인당 1억), 부상(1인당 2천만원), 사고당 무한 대물: 1사고당 1억원	보험회사
16	대외무역법	산업통상자원부	국내수출기업	조항 無	보증회사
17	물류정책기본법 (구. 화물유통촉진법)	국토교통부	국제물류주선업자	1억원이상	보험회사
1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	재화 등의 매매대금을 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규모 이상	보험회사/공제
19	변호사법	법무부	법무법인(유한)	보상 청구당 1억 이상	보험회사/공제
2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사 1인당 1억	보험회사/공제
21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복지시설운영자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의 한도	보험회사/공제
22	선원법	해양수산부	선박소유자	이 법에 정한 재해보상을 이행할 수 있는 범위	보험회사
23	세무사법	기획재정부	세무사, 세무법인	-세무사의 경우: 세무사 1인당 3천만원 - 세무법인의 경우: (①-②) 이상 ① 당해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의 수에 3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당해 세무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보험회사/공제/ 공탁

REPORT

연번	근거법률	주관부처	의무 대상자	보상한도	사업자
24	수상레저안전법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기구소유자 및 수상레저사업자	사망시 1억(최소2천만원)/ 부상시 상해급별	보험회사/공제
25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	관리주체 (승강기 소유자, 관리자 등)	사망시 8천만원(최소2천만원)/ 부상시 상해급별/ 재산피해 사고당 1천만원	보험회사
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	대인: 사고당 1억원 인당 1억원	보험/공제
2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舊.야생 동·식물 보호법)	환경부	수렵인	대인 1억원/대물 3천만원	보험회사
2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	관리/검사기관	사망시 8천만원(최소2천만원)/ 재산손해 2백만원	보험회사/공제
2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연구주체의 장	사망시 1억/ 부상시 상해급별	보험회사
30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자/특정사용자	〈인명피해〉 사망시 8천만원(최소2천만원)/ 부상시 상해급별 **〈재산피해〉** **업종에 따라 10억/3억/1억원**	보험회사/공제
3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사업자		보험회사/공제
32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외국인/사용자	상해사망 3천만원/ 질병사망 1천5백만원/ 보증보험 1인당 200만원	보험회사
33	우주손해배상법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우주물체 발사자	**2 천억원**	보험회사
34	우주개발진흥법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우주물체 발사자		보험회사
35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사업자	**1원자력사고당 3억SDR (국제통화기금특별인출권/약 5000억원)**	보험회사/정부
36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해양수산부	선박소유자	**책임한도액 : 451만SDR(5천톤 이하)/ 8천977만SDR(5천톤 이상)**	선주상호보험조합/ 보험회사
37	유선 및 도선사업법	행정안전부	유도선사업자	내용 없음	보험회사/공제
38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관리선운영자	사망시 1억(최소2천만원)/ 부상시 상해급별	보험회사/공제
39	인감증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증명청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름	보험회사/공제
40	입목에 관한 법률	법무부	입목저당권자	입목에 관한 산림화재 및 풍수해를 담보하는 보험회사의 손해보험 내용에 따름	보험회사/공제
41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원장	조항 無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4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토교통부	자동차 보유자	사망시 1억(최소2천만원)/ 후유장해시 장해급별/ 부상시 상해급별	보험회사/공제
43	전자거래기본법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공인전자문서 보관소	**연간 보상 한도액 20억원**	보험회사
44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	금융기관/업자	**업종별 20억/10억/5억/2억/1억**	보험회사/공제
4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사업자	매매대금을 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규모 이상	보험회사/공제/ 은행
46	전자서명법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공인인증기관	**〈책임보험의 최저보험금액〉** **매출액 100억 이상인 사업자10억원,** **매출액 10억 이상 100억 미만인 사업자 1억원,** **매출액 10억 미만인 사업자 5천만원**	보험회사
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조항 無	보험회사
4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감사인	**공인회계사 수*5천만원(최소30억) 이상**	보험회사
49	주택법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사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보험회사/공제/ 공탁
50	주택법	국토교통부	자가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자	조항 無	보증회사

SAMPLE

연번	근거법률	주관부처	의무 대상자	보상한도	사업자
51	청소년 활동진흥법	여성가족부	시설운영자	사망시 8천만원(최소2천만원)/ 부상시 상해급별	보험회사
52	청소년 활동진흥법	여성가족부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 계획을 신고 하려는 자,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사망 8천만원 부상 1천500만원 후유장해 8천만원	보험회사
53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업자	내용 없음	보험회사
5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부	학원운영자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보험회사/공제
55	항공법	국토교통부	초경량비행장치 운전자	사망시 1억(최소2천만원)/부상시 상해급별	보험회사
56	항공운송사업진흥법	국토교통부	항공사업자	항공운송의 책임에 관한 제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름	보험회사
57	해운법	해양수산부	선박관리업자	관리 선원수 20명 미만(1억)/ 50명 미만(2억)/그 이상(3억)	보험회사/보증기관
5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운송/주선사업자	1사고당 각각 2천만원 이상	보험회사/공제
59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소유자	사망시 1억5천만원(최소2천만원)/ 부상시 상해급별/대물 10억원	보험회사
6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부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	시설 규모별 300억원/100억원/50억원 등	보험회사
6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은행, 보험, 대부업자 등	가입대상별 20억/10억/5억	보험회사/공제/ 준비금
6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안전부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사망시 1억5천만원(최소 2천만원), 부상시 상해급별/대물 10억원	보험회사/공제
63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업자	실손(수리비, 최대 1억), 정액(최대 200만원)	보험회사
6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개정 중	보험회사/공제/ 준비금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SAMPLE

국토교통위원회

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운항시각을 배분·조정·회수할 수 있는 목적, 요건 등을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공시장 및 국제 환경의 변화 등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상에서의 기내 대기로 인한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원활한 항공운송을 도모하고자 각 의원이 대표발의 한 2건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정하여 국토교통위원장이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으로 발의함

구분	대안	박맹우안	박재호안
항공기 운항시각의 직권조정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 안전 확보, 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하여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게 함 (안 제18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의 공공성, 안전성, 효용성/이용편리성 확보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게 함 (안 제18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때 필요한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거나 이미 붙인 조건 또는 기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 제4항)		
항공기 운항시각 상호 교환 시 사전인가 제도 도입	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상호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안 제18조 제7항 및 제78조 제3항 제4호의2)	항공운송사업자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상호 교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항공기 운항시각 배분 등의 업무를 공사에 위탁	운항시각의 배분 등의 업무를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5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항시각의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등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3시간(국내항공운송) 및 4시간(국제항공운송)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지 못하도록 함 (안 제61조의2 제1항)		이동지역에서 안전 및 보안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용자가 탑승한 상태로 항공기를 장시간 머무르게 할 수 없도록 하고,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함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경우 탑승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30분마다 그 사유 및 진행상황 등을 알리게 함 (안 제61조의2 제2항)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2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르는 경우 해당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안 제61조의2 제3항)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해당 지연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함

쟁점1. 항공기 운항시각의 직권조정 제도 도입 등

① 타당성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의 공공성, 안전성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항공기 운항시각을 직권으로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항공기 운항시각의 배분 또는 조정 시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 항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항공자유화 체결국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한정된 자원인 항공기 운항시각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재인 항공기 운항시각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음. 안 제18조 제2항 제7호와 관련하여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항공안전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운항시각을 직권으로 배분·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가 항공안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SAMPLE

② 문제점

- 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항공기 운항시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항공기 운항시각이 항공운송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특정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시각의 배분·조정 자체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이익과 손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로섬(zero-sum) 게임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안 제18조 제2항 본문과 각 호의 내용들에 대하여 일정한 목적이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는 등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주기적인 서비스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운항시각을 직권으로 배분·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서비스 개선이라는 행정목적을 고려할 때 과도한 규제로 보이므로 이를 감안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쟁점2. 항공기 운항시각 상호 교환 시 사전인가 제도 도입

① 타당성

- 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시각과 상호 교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내 취항 항공사의 증가 및 노선 확대 등으로 항공사 간의 수익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열회사 또는 모자회사 간의 불공정 운항시각 교환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공공재인 운항시각의 사적거래 및 특수관계 회사 간의 부당지원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면이 있음.

② 문제점

- 아무런 예외 없이 모든 운항시각 교환 행위에 대하여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해당 행위가 항공운송사업자 간의 영업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사전승인 없이 운항시각을 상호교환한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안 제78조 제3항 제4호의2에 대하여는 해당 행위의 속성상 행정상 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보다는 과태료로 수정하여 그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쟁점3. 항공기 운항시각 배분 등의 업무를 공사에 위탁

① 타당성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운항시각 배분 등의 업무를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항공수요의 증가로 공항의 혼잡도가 높아짐에 따라 항공기 운항시각의 효율적인 배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양 공항공사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② 문제점

- 현재의 업무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양 공항공사 직원과 국적 항공사 직원들을 파견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항공사 직원들을 파견 받는 것은 업무와 직접 연관이 있는 민간기관 임직원의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 제2항에 위배되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하였음.
- 개정안은 이와 같은 위법 상태를 소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운항시각에 대한 직권조정 및 그 교환행위에 대한 사전인가 제도 등을 도입하여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와 해당 업무의 위탁이 상호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4. 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등

① 타당성

- 이동지역에서의 지연 문제는 매년 늘어나는 항공교통이용자 수를 감안할 때 국민 다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변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률유보사항이라 보이므로 현행대로 행정규칙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문제점

- 항공기의 지연은 항공기 접속 문제나, 항로 혼잡, 기상 악화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고 이동지역에서 항공기 지연에 대한 책임을 항공운송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예외사유를 기장이 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안전 및 보안상의 이유 외에 불가피하게 이동지역 내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SAMPLE

B&B Report

SAMPLE

Ⅲ. 국회본회의

1. 통과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통과 법률안 목록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강릉시설치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6. 거제군설치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경주시설치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3.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0호 폐지법률안
25.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1호 폐지법률안
26.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3호 폐지법률안
27.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6호 폐지법률안
28.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9호 폐지법률안
29.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32호 폐지법률안
30.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39호 폐지법률안
31.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3호 폐지법률안
32.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4호 폐지법률안
33.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7호 폐지법률안
34.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8호 폐지법률안
35.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9호 폐지법률안
36.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10호 폐지법률안
37.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9호 폐지법률안
3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국립항공박물관법안
40. 국산밀산업 육성법안
41.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4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9.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0.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5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AMPLE

5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55.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5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6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65.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6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6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9.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70. 서귀읍설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71.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7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73.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7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6.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78.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79.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80.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8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3. 시설치와 군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84.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8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6.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87. 양식산업발전법안
88. 어선안전조업법안
89.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9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9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9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9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4.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95.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96.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97.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9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9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0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1. 원주시설치에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102.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0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05. 인천직할시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에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10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0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0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1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AMPLE

국토교통위원회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의안번호 2021777
제 안 자 국토교통위원장

심사 진행 경과

상임위원회
2019.07.12.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가결)

법제사법위원회
2019.07.12. 회부
2019.07.3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2019.08.02. 원안가결
2019.08.16. 정부이송
2019.08.27. 공포

제안이유

현행법 제81조 제1항은 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사납금 제도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로 고질적 임금관행인 불법적 사납금제 그리고 사납금제와 연계된 장시간 택시노동 등으로 이어져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를 어렵게 하는 병폐로 오랜 기간 지적되고 있음.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997년부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전액관리제'(일명 월급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이후 대법원 판례(2004두7665)에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훈령의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사납금제의 폐단을 시정하지 못하고 '전액관리제'의 실질적인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를 신설하여 입법 보완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선의 택시 사업현장에서는 기존의 1일 단위 사납금제 기반의 임금형태가 지속되고 있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간의 택시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사납금제를 근절하고, 택시산업에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를 정착시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종국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택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상카풀이 허용되는 출퇴근 시간을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1조 제1항 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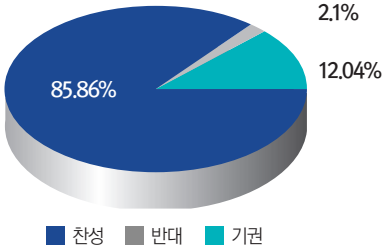
나.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명시하여, 전액 납부와 전액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및 제26조).

대안반영폐기 법률안(4건)

- [201034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발의)
- [201165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의원 등 10인발의)
- [20175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23인발의)
- [201086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발의)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19. 07. 31 / 2019. 08. 02
■ **발의자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표결의원** : 재석 191인 / 제적 297인
■ **표결결과** : 원안가결 191인(찬성 164인, 반대 4인, 기권 23인)



SAMPLE

찬성 164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강창일·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민·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기·김병욱·김상희·김성수·김성환·김영주·김영진·김영호·김정우·김정호·김종민·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해영·김현권·남인순·맹성규·민병두·민홍철·박경미·박광온·박범계·박병석·박용진·박재호·박 정·박주민·박홍근·변재일·서영교·서형수·설 훈·소병훈·송갑석·송기헌·송영길·송옥주·신경민·신동근·심기준·심재권·안규백·안민석·안호영·어기구·오제세·우상호·우원식·위성곤·유동수·유승희·윤관석·윤일규·윤준호·윤호중·이규희·이상민·이상헌·이석현·이수혁·이원욱·이종걸·이철희·이춘석·이학영·이후삼·이 훈·인재근·전재수·전해철·전현희·정성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조정식·최운열·최인호·추미애·표창원·한정애·홍익표 의원(95인)

자유한국당
경대수·김광림·김도읍·김상훈·김성원·김성태·김승희·김재경·김정재·김한표·나경원·문진국·민경욱·박덕흠·박인숙·송석준·송언석·안상수·염동열·윤상현·윤영석·윤재옥·이만희·이종명·이주영·이채익·이학재·이현승·이현재·임이자·장석춘·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점식·조경태·주광덕·최교일·함진규·홍철호 의원 (40인)

바른미래당
김동철·김중로·박주현·이동섭·장정숙·정병국·채이배·최도자 의원 (8인)

정의당
김종대·심상정·여영국·윤소하·이정미·추혜선 의원 (6인)

민주평화당
정동영·조배숙·황주홍 의원 (3인)

민중당
김종훈 의원 (1인)

무소속
강길부·김경진·문희상·박지원·손혜원·유성엽·이정현·장병완·정인화·천정배·최경환 의원 (11인)

반대 4인

자유한국당
유민봉·윤상직·윤한홍·정태옥 의원(4인)

기권 23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김한정 의원(2인)

자유한국당
강석진·곽대훈·권성동·김기선·김선동·박대출·신보라·심재철·엄용수·여상규·이명수·이장우·이종구·정우택 의원(14인)

바른미래당
김성식·신용현·유승민·유의동·이태규 의원(5인)

우리공화당
조원진·홍문종 의원(2인)

SAMPLE

P&B Report

별첨

1. 8월 신규 상정 법률안 목록
2. 8월 국회 일정표
3. 용어해설

SAMPLE

8월 신규 상정 법률안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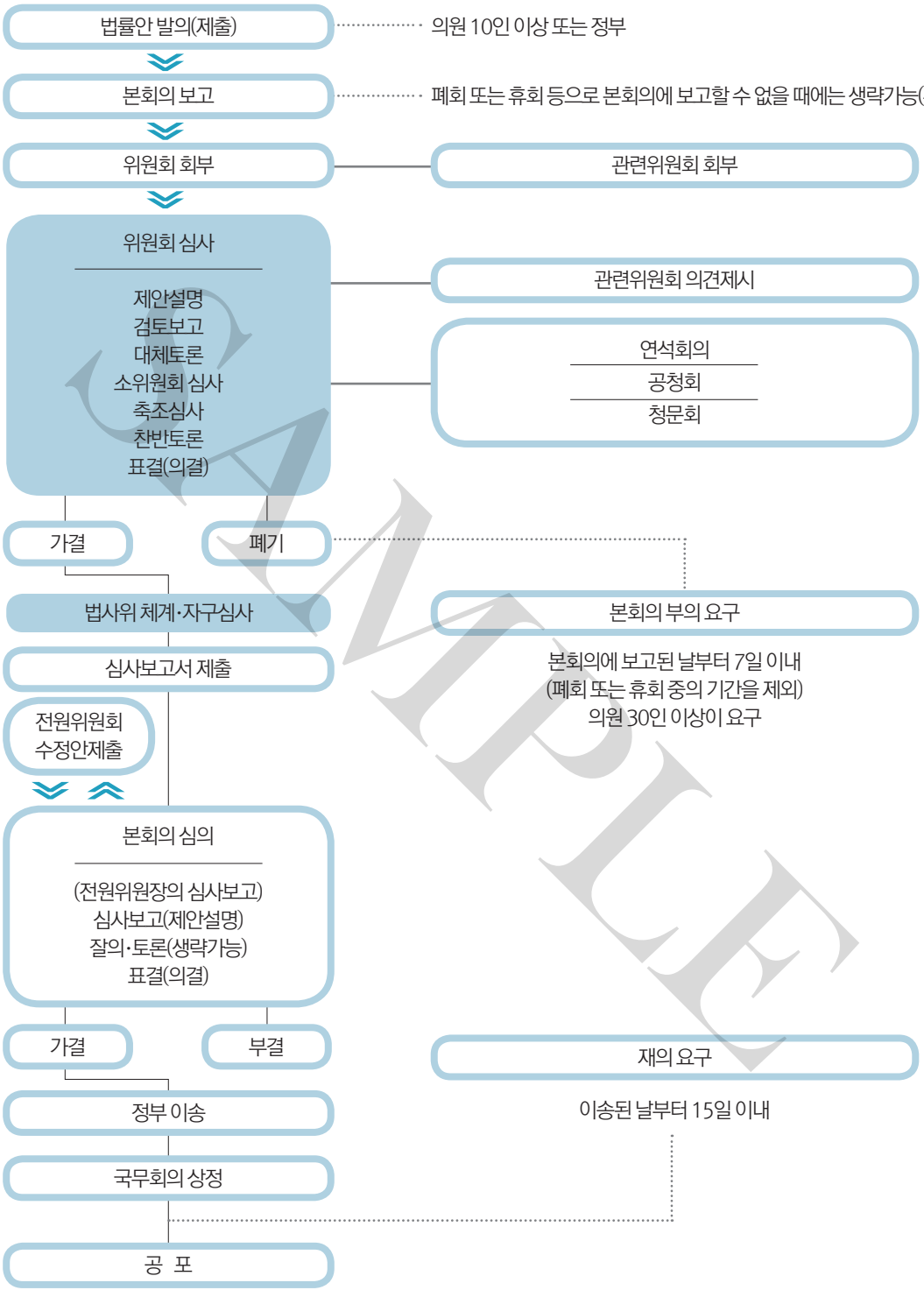
상임위원회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기획재정위원회	1. 갈등관리기본법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2. 갈등기본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3.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4. 공공정책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5.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7.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1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1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
	14. 월남전참전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1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교육위원회	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방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5.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1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11.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1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1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1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SAMPLE

상임위원회	법률안명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5.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16.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17.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18.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19.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20.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21.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환경노동위원회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900)
	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04)
	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
국토교통위원회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08)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051)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84)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10.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1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1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1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1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52)
	1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463)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18.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19.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
	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18)
	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34)
	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0)
	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SPECIMEN

법률안 심사절차



※ 신속처리대상안전 지정 시 소관위 180일, 법사위 90일 이내 심사 완료

SAMPLE

Policy & Business Report



별첨 **8월 국회 일정표**

● 상임위원회 ● 소위원회

일자 / 위원회	1일	2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국회본회의		● 1차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	●
정무위원회									● 제1소위					● 제2소위		●		●			●	
기획재정위원회																●						
교육위원회													●	●			●	●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					●
국방위원회			●												●							
행정안전위원회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			● 농림축산식품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						●	
환경노동위원회														●	● 환경						● 환경	
국토교통위원회														●		● 교통	●	● 국토				
외교통일위원회	●																					
정보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							●

SAMPLE

SAMPLE



DAERYOOK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0615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역삼동 동훈타워 7, 8, 10-13, 15, 16층)

www.draju.com